제164회 영등포구의회
201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11. 12. 12

行 政 委 員 會
專門委員 李憲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89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임신공무원에게 1일 1시간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를 부여하는 복무조례 개정으로 출산·육아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현재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임신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개정(안제24조 제4항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순화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를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변경하였으며

- 안 제2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함.
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
○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내용 중 “여자공무원”을 “여성공무원”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인 「지방공무원법」이 2011. 5. 26일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“여성”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 지며

○ 안 제24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시간을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육아와 출산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보여 짐.

○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